



제438회국회(임시회)  
제 2 차 정 무 위 원 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핀플루언서에 대한 보유 금융투자상품 공개 의무 신설 〉  
■ 김승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108호)

2026.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승원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2. 26.
3. 회 부 일 : 2026. 2. 27.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투자에 관한 자문을 업으로 하는 자를 투자자문업자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조언을 업으로 하는 자를 유사투자자문업자로 규율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를 하도록 하고 이들의 영업행위 규칙 등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서 대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판단에 관한 조언을 하는 소위 ‘핀플루언서’들이 등장하고 있음. 이들의 조언에는 부적절한 정보 전달, 이해상충의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발언이 일반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예측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대가 여부와 상관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자문을 하는 자는 자신이 보유한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및 수량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80조의7 신설 등).

###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투자자문업자 및 유사투자자문업자 외의 자로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반복적으로 하는 자(이하 “핀플루언서”)로 하여금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및 수량을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0조의7 신설 등).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제180조의7(유사투자자문을 하는 자의<br>보유자산 공개의무) 투자자문업자 및<br>유사투자자문업자 외의 자로서 금융<br>투자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br>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br>등을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br>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br>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대통령령으<br>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복적으로 하<br>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br>따라 보유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의<br>종류 및 수량을 공개하여야 한다. |
| 제4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br>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br>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46조(벌칙) -----<br>-----<br>-----<br>-----.                                                                                                                                                                                                                                |

| 현행                                 | 개정안                                                                      |
|------------------------------------|--------------------------------------------------------------------------|
| 1. ~ 31. (생략)<br><u>&lt;신설&gt;</u> | 1. ~ 31. (현행과 같음)<br>31의2. 제180조의7을 위반하여 보유한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및 수량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 |
| 32. ~ 64. (생략)                     | 32. ~ 64. (현행과 같음)                                                       |

□ “핀플루언서(finfluencer)”란 금융(finance)과 인플루언서(influencer)의 합성어로,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주식·부동산·가상자산 등 금융 정보와 투자조언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의미함.

○ 최근 세계적으로 개인 투자자에 대한 핀플루언서의 시장 영향력이 커지면서<sup>1)</sup>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도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sup>2)</sup>

○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핀플루언서가 대중의 신뢰를 이용하여 선행 매매를 하거나 관련 테마주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피해를 야기한 불공정거래를 금융당국이 다수 적발·조치한 바 있음.<sup>3)</sup>

- 예를 들어, 텔레그램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자가 투자경력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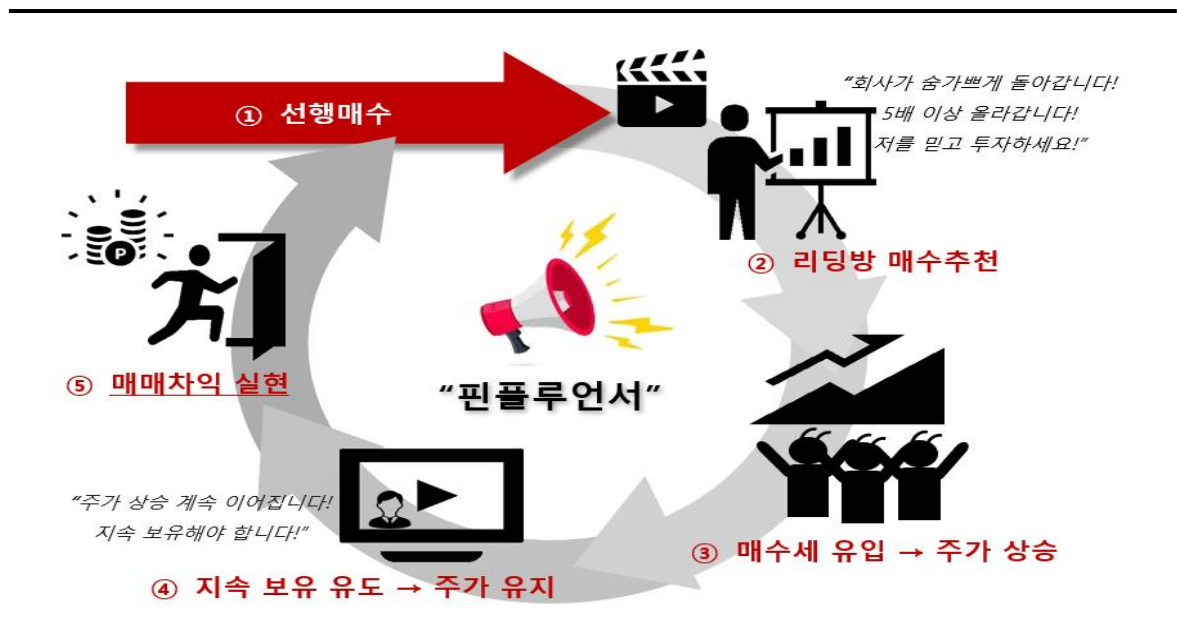
1) 미국 금융산업규제국(FINRA, 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에 따르면, 35세 미만의 미국 투자자 60% 이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정보를 얻는 반면, 금융 전문가를 활용한 사람은 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세계경제포럼(WEF)은 향후 Z세대가 얻는 금융정보는 핀플루언서가 주도할 것이며, 금융정보는 소셜미디어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함.

2) 안유미, “최근 핀플루언서 영향력 확대에 따른 감독 강화 추세”, 「자본시장포커스(2024-25호)」, 자본시장연구원, 2024. 12. 16.

3)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시장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핀플루언서 등의 불공정거래 집중 점검 및 고강도 조사 실시”, 2026. 3.

수익률을 허위·과장하여 회원을 유치한 후 특정 종목을 소개하기 직전에 주식을 집중매수하고, 종목 소개로 매수세가 유입되어 주가가 상승하면 차익을 실현하는 한편, 본인이 보유 중인 종목은 추천하지 않는다고 운영방침을 안내하면서도 이와 같은 선행매매 행위를 지속한 사례가 있음.

[그림] 텔레그램 운영자의 선행매매 예시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한편, 현행법은 투자자문업과 유사투자자문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율하고 있음.

○ 금융투자업의 하나<sup>4)</sup>인 “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치나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은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 2. 투자중개업 3. 집합투자업 4. 투자자문업 5. 투자일임업 6. 신탁업

업으로 하는 것임.<sup>5)</sup>

○ “유사투자자문업”은 고객으로부터 일정 대가를 받고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해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이나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개별 투자자를 상정하지 아니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 조언)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함.<sup>6)</sup>

- 당초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방송 등을 통하여 조언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아니하고<sup>7)</sup>, 이 중 간행물,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일정한 대가를 받고 조언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를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보았으나<sup>8)</sup>, 온라인을 통한 불건전영업행위로 투자자의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 ⑦ 이 법에서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하 “금융투자상품등”이라 한다)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①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하는 것을 업(이하 이 조 및 제101조의2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이라 한다)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③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조언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업(이하 이 조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이라 한다)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 2024년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있었음.

-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단방향 채널<sup>9)</sup>의 간행물·출판물·통신물·방송 등을 통해 개별성 없는 조언을 하는 방식은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주식리딩방<sup>10)</sup>이나 SNS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방식은 투자자문업으로 구분하여 규율함.<sup>11)</sup>

- 현행법상 투자자문업자는 등록대상,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신고대상으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12월말 기준 투자자문업자는 전업사(자문·일임 겸업 포함) 233개사, 겸업사(운용사, 증권사 등) 324개사이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1,706개사로 파악됨.

- 그런데, 현행법은 투자자문업자 또는 유사투자자문업자 외의 자로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등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반복적으로 하는 자<sup>12)</sup>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율을 두고 있지 않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핀플루언서로 하여금 자신이 보유한 금융투자상품

9)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Push 메시지, 알림톡 등

10) 불특정다수에게 오픈채팅방, 스팸메세지 등을 통해 무료로 주식종목을 추천하고, 유료회원 가입 시 비공개 채팅방으로 초대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③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개별성 없는 조언(개별 투자자를 상정하지 아니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에 관한 조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본문의 조언과 관련하여 온라인상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고객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예를 들어,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고 단방향 채널의 방송 등을 통하여 개별성 없는 조언을 반복적으로 하는 자

의 종류·수량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앞에서 사례로 든 선행 매매 행위를 통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고, 이에 따른 투자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보임.

□ 개정안 심사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핀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긍정적이나, 개인이 보유 중인 금융투자상품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한될 소지가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둘째, 개정안에 따라 공시의무 대상이 되는 핀플루언서의 범위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규제대상을 ① 투자자문업자 및 유사투자자문업자 외의 자로서 ② 금융투자상품 매매 유인을 목적으로 ③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판단 등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④ 반복적으로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투자판단에 관한 조언을 반복적으로 하는 자의 범위를 특정하기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의 의도가 없는 일반인에 대해서도 규제가 적용되어 그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음.
  - 또한, 개정안의 공시의무를 신설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고객으로

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단방향 채널로 투자판단에 관한 조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주식리딩방·SNS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 등을 통하여 유료 회원제로 영업을 영위하는 투자자문업자에게 그 의무를 배제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바, 규제대상 범위를 보다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셋째, 개정안은 금융투자상품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금융투자상품의 종류·수량이 허위·누락되어 공개된 경우에 대한 제재근거는 미비하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음.

-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금융업자가 아닌 영업의도가 없는 일반인<sup>13)</sup>에게 규제를 적용하여 사적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우려가 있고, 규율대상이 수시로 변경<sup>14)</sup>되고 모호<sup>15)</sup>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며,
- **법무부**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투자자문업자·유사투자자문업자 및 부동산 등 다른 자산과의 규제 형평성, 규율대상 매

13) 구독자 수가 적은 SNS 사용자 등

14)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과 ‘반복적으로 하는’이라는 요건으로는 규제대상을 확정하기 어려움.

15) 텔레그램 등 일부 SNS의 경우 대상자 신원 파악 불가

체 및 반복성 요건의 불명확성, 보유 중인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종류·수량을 공개하도록 하는 규제범위의 과도성 등을 고려할 때 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 포괄위임금지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금융감독원은 이에 더하여 공시 대상자의 위반여부 점검을 위하여 과도한 행정력이 소요<sup>16)</sup>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
|--------------|
| 문 의 처        |
| 02)6788-5111 |

---

16) 3,000개 채널, 연간 채널별 콘텐츠 250개(영상 10분) 점검 가정 시 62.5명 필요

【참고자료1】 주요국 핀플루언서 규제 현황<sup>17)</sup>

| 국가  | 주요내용                                                                                                                                                                                             | 위반시 제재                                                                                                                                                                                                                                                                                         |
|-----|--------------------------------------------------------------------------------------------------------------------------------------------------------------------------------------------------|------------------------------------------------------------------------------------------------------------------------------------------------------------------------------------------------------------------------------------------------------------------------------------------------|
| 영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CA에 사전 승인받은 금융서비스 및 상품의 홍보만 허용</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제한 벌금 및 최대 2년 징역형</li> <li>○ 이중처벌 가능</li> </ul>                                                                                                                                                                                                      |
| 미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INRA(금융산업규제국) Rule: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대한 요구사항 및 금지사항 명시</li> <li>○ 1933년 증권법, 1934년 증권거래법, 1940년 투자자문업자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율</li> <li>○ FTC법 제5조: 사기성 광고 금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건의 성격에 따라 형사처벌로 최대 5백만달러 벌금 및 20년 이하의 징역형, 이익환수(손해배상) 등 민사적 제재금, 중지명령 등</li> <li>○ 이중처벌 가능</li> </ul>                                                                                                                                                |
| 프랑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핀플루언서 자격인증 제도 운영: 인증시험, 교육 및 모니터링 절차</li> <li>○ 통화금융법: 핀플루언서 금지사항 및 준수사항 명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대 30만유로의 벌금 및 2년 이하의 징역형</li> </ul>                                                                                                                                                                                                                  |
| 호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핀플루언서 활동을 위한 사전 AFS(금융서비스) 라이선스 요구</li> <li>○ 핀플루언서 활용 AFS 라이선스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명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사처벌: 개인은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600 penalty unit(약 AU\$19.8만), 법인은 6,000 penalty unit(약 AU\$198만)</li> <li>○ 민사적 제재: 개인은 5,000 penalty unit(약 AU\$165만) 또는 3배 이익환수 중 큰 금액, 법인은 50,000 penalty unit(약 AU\$1,650만) 또는 3배 이익환수 또는 연간매출의 10% 중 가장 큰 금액</li> </ul> |
| 인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핀플루언서 활동을 위한 SEBI 등록 의무화: 자격증명, 이해상충 방지 등을 공개</li> <li>○ 규제대상 기관과 미등록 핀플루언서 간의 연계활동 금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금지, 이익환수, 벌금형 등</li> </ul>                                                                                                                                                                                                                          |

17) 안유미, “최근 핀플루언서 영향력 확대에 따른 감독 강화 추세”, 「자본시장포커스(2024-25호)」, 자본시장연구원, 2024. 12. 16.

【참고자료2】 투자자문업자 및 유사투자자문업자 비교<sup>18)</sup>

| 구분             | 투자자문업자                                                                                                                                                   | 유사투자자문업자                                                                                                                                                             |
|----------------|----------------------------------------------------------------------------------------------------------------------------------------------------------|----------------------------------------------------------------------------------------------------------------------------------------------------------------------|
| 진입<br>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위 등록</li> <li>* 자기자본(증권·파생상품 포함시 2.5억원 ↑/제외시 1억원 ↑), 대주주, 임원, 운용전문인력(1인 이상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 요건 등 충족 필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위(금감원) 신고</li> <li>* 결격요건(유사수신법 등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 집행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미해당시 단순 신고 후 영업 가능</li> </ul>                        |
| 영업<br>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대일(1:1) 투자자문</li> <li>* 개별 투자자별로 차별화된 자문서비스 제공</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방향 채널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 대상의 투자조언</li> <li>* 불특정 다수에게 동질적 조언서비스 제공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 수령 필요)</li> <li>※ 양방향(1:1) 채널 사용 금지</li> </ul> |
| 감독<br>검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감원 검사대상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감원 제한적 검사 (보고·자료제출의무 위반시, 불건전영업행위)</li> </ul>                                                                              |
| 권유<br>규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당권유금지, 설명의무, 적합성·적정성 원칙 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규제 미적용</li> </ul>                                                                                                        |
| 금지<br>행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광고규제, 계약서 교부의무 등 적용</li> <li>* 투자자문업자 영업규제 및 금융투자회사 공통 영업규제 모두 적용</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자문업자 영업행위규제 중 일부* 준용, 별도 광고규제 적용</li> <li>* 금전·증권 등의 보관·예탁 금지, 금전·증권 등의 대여 금지, 선행매매 금지,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금지</li> </ul>         |
| 공시<br>보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경영사항 공시 및 업무보고서 등 제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 폐지, 명칭·소재지·대표자 변경, 임원 변경 보고</li> </ul>                                                                                   |
|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감원 홈페이지 → 금융회사 정보 →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감원 홈페이지 → 금융회사 정보 → ‘유사투자자문업자’</li> </ul>                                                                                  |
| 금융<br>회사<br>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회사 해당 →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등 적용</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회사 미해당 →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등 미적용</li> </ul>                                                                              |
| 현황<br>(‘25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업사(자문·일업 겸업 포함) 233개사</li> <li>- 겸업사(증권사, 운용사 등) 324개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06개사</li> </ul>                                                                                                          |

18) 금융위원회 제출자료